



#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

## 제 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알림

---

1. 전세연 제2024-138호(2024.11.06.)와 관련입니다.

2. “여객자동차 운송업계 부담완화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이 입법예고(‘24.11.06)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= 아 래 =

### □ 여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

#### 1.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기준 대수 완화

- 특별시 및 광역시 기준대수 “20대”를 “10대”로 조정. (개정)
- 등록기준대수는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된 전체 차량 대수를 의미한다. (신설)

#### 2. 전세버스 운송사업 차고면적 기준 완화

-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운송사업자가 보유하여야 할 차고의 전체면적 기준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보유차량대수를 경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시·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. (신설)

※ 붙임 : 1) 전자관보 1부.

2) 국토교통부 공고문 1부. [끝]

※ 붙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[www.tourbus.or.kr](http://www.tourbus.or.kr)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 
이사장 오성훈



과 장 박영수 부 장 라영석 상 무 박호동 이사장

협조자

시행 서전버조 24- 182호 ( 2024.11.06 ) 접수 ( )

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(교통회관 11층)

전화 02-422-0019

전송 02-418-0071 /

/ <http://www.tourbus.or.kr>

/ 공개

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